## 77. 악기공장 도장근로자에서 발생한 기관지확장증

**성별** 남 **나이** 48세 **직종** 도장 **작업관련성** 낮음

- 1. 개요: 황OO는 1983년 11월에 OO악기에 입사하여 2002년 1월 휴직할 때까지 도장부서에 근무하였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만 3년 간 인도네시아공장에서 파견 근무하였고,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나올 무렵 폐결핵 앓아 현지병원에서 6-7개월 가량 약물 치료를 받았다. 국내에 귀국 후에도 약국에서 5-6개월 가량 결핵 약을 복용하였다. 이후 2001년 2월 감기증상이 오래가고, 나아지지 않아 개인병원을 경유하여 OO병원에 입원하여, 기관지확장증을 진단 받았다. 2002년 8월 28일 상기 질환에 대해 산재요양신청을 하였고, 2002년 9월 10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 업무관련성 평가를 의뢰하였다.
- 2. 작업환경: 인도네시아 파견근무기간 3년을 포함하여 총 19년 가량 도장업무를 하였다. 근무시간은 잔업을 하는 경우 평균 10시간 이상이었다. 환기시설의 정도는 보통이었으나, 환기시설 변경된 것이 3-4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과거 작업환경은 더 열악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파견근무시에는 합판 등으로 막아 작업을 할 정도로 환기시설을 비롯한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다. 작업환경 측정기록을 보면, MIBK, 스틸렌, 아세톤, 에틸 벤젠, 초산부틸, 클실렌 이성체, 2,4 TDI 등에 노출되었고, 이들 물질에 대한 노출량이 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었고, 대부분이 기준치 절반이하로 측정되었다
- 3. 의학적 소견: 황OO의 기관지 확장증은 TDI를 비롯한 작업환경 노출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보다, 증상이 시작되기 전에 발병한 결핵의 합병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였다.
- 4. 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 황OO에게 발생한 기관지확장증은
  - ① 황OO는 19년간 도장 작업을 하며, 여러 화학물질로부터 기관지 자극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 ② 기침 및 호흡곤란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 폐결핵을 앓았고,
  - ③ 유발검사 등을 통해 천식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서,
  - ④ 작업환경요인 보다는 폐결핵과 같은 감염성 질환 후에 발생한 기관지 확장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으로.

황OO에게 발생한 기관지확장증은 도장작업과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